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2. 27.

행정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 및 발의자 : 2019. 2. 8.(금),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2. 12.(화) (의안번호 제81호)
-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 2. 25.(월),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 2. 제안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유희수

나.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1) 위로금지급 금액 일부내용 변경 (안 제9조제1항)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 위로금 지급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2) 예산조치 :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반영

3) 기 타

- 입법예고(2018. 11. 28. ~ 2018. 12. 18.)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 아동영양평가 결과: 원안동의

### 3.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
----	--------------

- 「국가보훈기본법」이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2005년 5월 31일자로 제정되었음. 같은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원칙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 5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

- 안 제9조는 사망위로금을 30만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으로 위로금을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명문화된 금액으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임

-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지만, 비용추계서와 2019년 예산편성을 보면 부서에서 금년도에 지급할 위로금 금액은 40만원임
- 사망위로금 관련, 2017년 12월 제24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되었음. 개정된 사항은 30만원 지급으로, 기존보다 10만원을 증액하고 금액을 명문화하였음

**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망위로금 지급 현황**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현재 중량구가 4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으며, 도봉구, 강북구, 구로구가 15만원으로 가장 적게 지급하고 있음

<표 2> 자치구별 조례·규칙상 사망위로금 기준 현황

구분	자치구명
40만원	중량구
30만원	강남구, 금천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20만원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15만원	도봉구
예산의 범위 내	20만원 - 성북구, 양천구 / 15만원 - 강북구, 구로구

**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대상자 현황**

- 강동구에는 11개 보훈단체, 4,690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음.

<표 3> 강동구 보훈단체 현황 및 인원

• 광복회(73명)	• 상이군경회(1,038명)	• 전몰군경유족회(551명)
• 전몰군경미망인회(553명)	• 무공수훈자회(927명)	• 6.25참전유공자회(594명)
• 고엽제전우회(356명)	• 특수임무유공자회(24명)	• 월남전참전자회(1,803명)
• 십자성 특별지회(46명)	• 전우 특별지회(49명)	

※ 자료제공: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마.	종합 검토의견
----	---------

- 사망위로금 증액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들에게 금년도 위로금 지급금액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사망위로금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증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사료됨
- 개정안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나, 조례안 심의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 담당부서는 의회의 조례안 승인이라는 사전절차를 준수해야 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 없음

#### 5.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